



제432회국회(임시회)
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명확화 등〉
■ 이견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5741호)

2026. 3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전문위원 성 소 미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명확화 등	2
※ 참고자료	
1. 희망리턴패키지 사업	7
2. 폐업 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사업	8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이건설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3. 회부연월일 : 2025. 12. 3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,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,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, 법률문제,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Ⅲ. 검토의견

1.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명확화 등

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① ‘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’, ② ‘폐업 관련 법률 관련 지원’, ③ ‘채무·회생·파산 등 세무 관련 지원’, ④ ‘폐업 관련 심리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’ 등을 추가하고(안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),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안 제12조제5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12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	제12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재창업 지원	1. (현행과 같음)
2.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	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<u>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</u>
<신설>	4. <u>폐업 관련 법률 관련 지원</u>
<신설>	5. <u>채무·회생·파산 등 세무 관련 지원</u>
<신설>	6. <u>폐업 관련 심리적 어려움 완화를</u>

3.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~ ④ (생략) <신설>	<u>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</u> 7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
---	--

현행법은 중소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,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¹⁾ 결과에 따르면, 폐업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 236만원²⁾으로 나타났으며, 폐업에 드는 비용은 평균 2,188만원³⁾으로 조사되었음.

폐업 절차 진행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△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(31.1%), △권리금 회수 및 업체 양도(24.3%), △대출금 상환(22.9%) 등으로 나타났으며,

폐업 이후 가장 힘든 사항으로 △가계 생계비 부족(35.5%), △채무

1) 중소기업중앙회, “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”, 2025.3.19.

2) 제조업의 경우 1억 4,441만원, 숙박·음식점업의 경우 9,046만원으로 나타남.

3) 세부 항목별 평균 비용은 △철거비 518만원, △원상복구비용 379만원, △종업원 퇴직금 563만원, 세금 420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, 제조업의 경우 3,859만원, 숙박·음식점업의 경우 1,219만원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
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 곤란(29.8%), △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(21.1%), △사업 실패로 인한 낙담 등 정신적인 고통(9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반면,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(희망리턴패키지, 새출발기금 등)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.2%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, 그 이유에 대해서는 △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(66.9%), △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(21.4%) 등으로 조사되었음.

마지막으로, 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할 정부 정책(복수 응답)으로는 △대출금 상환 유예, 이자 감면(52.6%), △폐업 비용 지원(51.0%), △폐업 이후 진로 지원(46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바,

동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, 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, ② 경제적 부담 외에 자존감 상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회복 지원 및 ③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줌.

개정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재창업·재취업 지원 외에도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임.

개정안의 취지대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정리 컨설팅, 법률

및 세무 관련 지원,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 등이 체계적·안정적으로 추진될 경우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·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

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·운영함으로써 폐업과 관련된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참고로,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‘희망리턴패키지’ 사업(참고자료 1)을 추진 중으로, 사업 정리 컨설팅 제공, 점포철거비(최대 600만원), 임대차·세무 등 관련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에 관한 지원을 하는 한편, 재취업 지원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산림치유 및 심리지원 서비스(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협업)를 제공 중임(참고자료 2).

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범위가 명확해짐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, 현재 운영 중인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플랫폼⁴⁾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·관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.

4)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: <https://www.sbiz.or.kr/nhrp/main.do>

문 의 처
02)6788-5465

【참고자료】

1

희망리턴패키지 사업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,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·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
- ('26년 예산) 3,055억원

□ 주요 내용

- **원스톱폐업지원(1,932억)**: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 애로를 신속 지원
 - ① (사업정리컨설팅)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, 집기·시설 처분 방법, 사업장 양수도 등
 - ② (점포철거비)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(3.3㎡당 20만원, 최대 600만원)
 - ③ (법률자문)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 - ④ (채무조정)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,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확대
- **특화취업지원(386억)**: 폐업(예정)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교육, 전직장려수당, 취업 연계 등을 통해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
 - ① (취업교육) (기초) 직업탐색, 자아성찰 등,
(심화) 구직자 정체성 확립, 대면취업상담 등
 - ② (전직장려수당) 심화교육 수료시 60만원 + 취업 후 일정기간 근속 시 40만원(총 100만원) 지원
 - ③ (국민취업연계수당)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 활동 시 20만원씩 6개월간 지급(최대 120만원) 지원(고용노동부 협업)
 - ④ (심리치유) 산림치유서비스 및 심리지원서비스 제공(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협업)
- **재기사업화지원(738억)**: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을 위해 전문가 진단, 경영개선,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
 - ① (경영진단) 분야별(경영·투자·판매 등) 전문가를 통해 사업체별 1:1 경영위기 문제 진단
 - ② (사업화교육) 사업개선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경영 이론 및 실습교육(세무, 재고관리 등)
 - ③ (사업화자금) 진단된 문제해결을 위해 컨설팅 및 자금(최대 2천만원, 지원금의 50% 자부담)지원
 - ④ (사업화PM 지원) 사업화 전담 PM 1:1 매칭 및 밀착관리 지원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폐업 후 심리적 상실감·우울감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존감 회복 및 트라우마 해소를 통해 안정적·지속적 재기 활동을 지원
 - * 재기 포기 사유(31.8%): 낮은 재기 성공가능성, 심리적 불안감 등('25 재기성과 분석)
- (지원내용) 심신 안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
 - * 심리회복 효과 지속을 위해 1인당 연간(당해년도) 총 3회까지 참여 허용
(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총 3회까지 참여)
 - ※ 동반자 1인 동행 가능

□ 세부내용

- (지원내용) 체험형·휴식형 심리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상담지원 등
 - (심리회복) 폐업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을 위해 산림·해양·도심 환경에서 휴식·체험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 제공
 - (상담지원) 지역별 전문 기관의 상담 인력을 활용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트라우마 해소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

<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(안) >



- (운영방식) 공공·민간 위탁 협업

< 심리회복 지원 체계도 >

